



2016 지평 사회 책임 보고서

변호사 윤리를 지키다

01

지평의 윤리현장

지평은 설립연도인 2000년에 이미 「법무법인 지평 윤리현장」을 제정하였다. 윤리현장에서는 의뢰인을 위한 충실의무, 고지의무, 정당한 범위의 업무처리, 이해관계 충돌, 쌍방대리 금지, 사익추구금지, 차별금지 등 13개 조문을 두고 있다.

윤리현장 제1조에 의하면 지평의 구성원들은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 관련 규정 등 일반적인 윤리규범의 내용을 항상 이해하고 성실히 지켜야 하며 지평의 구성원으로서 업무에 관하여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품위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지평은 윤리현장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9년 1월 22일에는 전문인력 징계규정을 제정하였다.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을 계기로 지평은 2016년 7월 1일 윤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윤리위원회(김지형 위원장)를 다시 정비하였다.

윤리위원회 규정은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윤리위원회는 윤리현장의 실현 및 법조윤리 이행을 위하여, ① 변호사법, 윤리현장, 윤리규정, 기

타 법조윤리에 위반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처리, ② 변호사 윤리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③ 위반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 및 전문인력징계규정에 따른 징계개시의 청구, ④ 구성원에 대한 윤리교육, ⑤ 기타 윤리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윤리위원회 규정 제4조). 또한 윤리위원회 규정에서는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내부 고발과 징계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윤리위원회는 대표변호사와 경영위원 3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법무법인 지평 윤리현장(조문 일부)

4. 지평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1. “최선의 노력”이란 업무처리과정에 적용되는 법령 및 전문지식과 관행, 의뢰인과의 합의, 지평이 정한 업무처리 기준은 물론 구성원 스스로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며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4.4. 지평의 구성원들은 업무의 처리과정 및 내용에 관하여 신속하고 상세하게 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의뢰인이 설명을 요청할 경우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5. 지평의 구성원들이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활동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령과 사회정의 또는 직업적 양식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6. 법무법인 지평의 구성원들은 위임받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거짓된 행동을 하거나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정당하지 않은 보수를 청구하지 않는다.

8. 지평의 구성원들은 어떤 경우에도 의뢰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8.1. 지평의 구성원들은 지평과 그 구성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평의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회사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 및 의뢰인을 위하여 처리한 업무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8.2. 지평의 구성원들은 의뢰인 및 의뢰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업무에 관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일상적인 말과 행동, 회사 의 관리 및 제3자에 대한 관계를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9. 지평의 구성원들은 업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증권투자를 비롯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10.1. 지평은 경제적 능력, 사회적 신분, 그 밖에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의뢰인 또는 조력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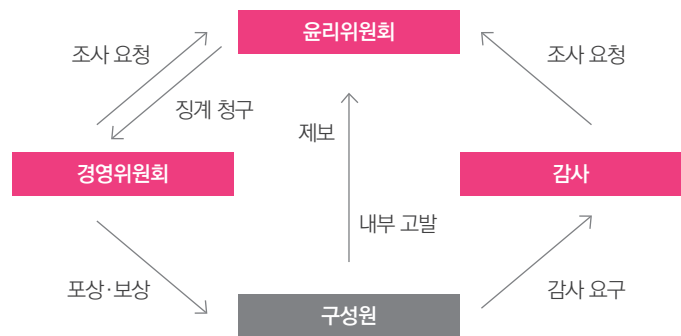
윤리성 지표 준수

항목	존재 여부
이익충돌 시 내부통제절차	○
위법행위 발견 시 내부통제절차	○
부정청탁금지법준수기준여부, 교육여부, 규정이나 가이드라인	○
전관 변호사 및 비법조인 전문가 활용에 관한 법조윤리정책	○
비법조인 전문가 사건수임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
과다수임, 비윤리적 사건수임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

지평은 윤리성이 문제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경영위원회와 각 팀장들이 윤리현장에 기초하여 논의하여 결정해 왔다. 예를 들어, 위 지표 중 사건수임 과정에서 이익충돌이 문제되는 경우나 과다수임, 비윤리적 사건수임에 관한 내부통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구성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었다. 다만, 과거 소송수행 과정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업무수행방법에 대해 한 예비구성원변호사가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있기도 하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파트너 및 팀장들이 충분히 논의하였고, 결국 해당 사건 수임을 철회한 경우가 있었다.

윤리통제절차



03

공직 퇴임 전문가의 근무 현황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변호사법 제31조 제3항). 지평은 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를 영입하더라도 퇴직 후 1년 동안,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하였던 국가기관의 사건에 관하여는 이들을 배제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소송서류 및 변호사의견서 등에 담당변호사로 표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해당 사건의 수임이나 수행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지평이 영입한 공직 퇴직 법조인은 우측 표와 같다.

공직 퇴직 법조인

성명	공직 퇴임일	입사일	퇴직 시 직위	비고
강경운	1998-08	2011-0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순천 사무소
강성국	2015-02	2015-03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본사
강호정	2012-02	2013-12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검사	부산 사무소
김영문	2015-02	2015-03	대구지방법검찰청 서부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	본사
김지형	2011-11	2012-12	대법관	본사
박영주	2001-02	2001-02	부산지법 판사	본사
박정수	2015-02	2015-03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본사
사봉관	2016-02	2016-03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본사
신승기	2007-08	2012-06	부산지방법검찰청 특수부 검사	부산사무소
이공현	2011-03	2011-03	헌법재판소 재판관	본사
이상근	2007-02	2012-06	부산고등법원 판사	부산사무소
이홍재	2009-01	2013-04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외사부장검사	본사
최세훈	2016-01	2016-02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 부장검사	본사
한재철	2002-02	2011-0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판사	순천 사무소

공직 퇴직 비법조인

성명	공직 퇴임일	입사일	퇴직 시 직위	비고
강영주	2002-04	2009-09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본사
김대식	2013-02	2015-03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	본사
김석동	2013-02	2015-04	금융위원회 위원장	본사
서문용채	2011-02	2014-07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장	본사
이준길	2006-11	2015-11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팀장	본사
장항석	2007-10	2012-10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본사
진연수	2006-12	2012-11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사무관	본사

비법조인 전문가와의 협업은 해당분야의 종합적이고 실무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 지평이 비법조인 전문가의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영입한 공직 퇴직 비법조인은 우측 표와 같다.

04

향후 계획

지평은 2016년 경영위원회가 사실상 겸하던 윤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하였다. 경영위원회는 윤리성과 수익성이 충돌할 때 후자를 우선시할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수임과 수행에서 변호사 윤리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변호사 윤리는 새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지평은 윤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독립적인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고, 변호사 윤리를 준수하는 것이 고객에게도 이익이 되며, 로펌의 지속가능성의 기초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지평의 변호사 윤리 실천을 위한 계획
김상준 변호사



그동안 지평은 윤리성이 문제될 수 있는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건의 수임 여부를 결정할 때 사전에 경영위원회와 각 팀장들에게 메일로 사안을 설명하여 논의를 전개하기도 하였고,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회의를 별도로 개최하여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영위원회는 윤리성과 수익성이 충돌할 때 후자를 우선시할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통제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평은 2016년 윤리위원회를 재정비하면서 독립적인 기구로 구성하고 규정도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윤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